

부산지방법원 2024. 9. 11 선고 2024나4718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]

---

## 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4. 9. 11 선고 2024나47180 판결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1. 23 선고 2022가단130625 판결

## 전문

원고, 피항소인A

피고(선정당사자), 항소인N

변론종결 2024. 7. 10.

판결 선고 2024. 9. 11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1. 23. 선고 2022가단130625 판결

## 주문

1. 제1심판결 중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2.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가. 제1심 공동피고 B, C은, ①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(이하 '피고들'이라 한다), 원고, 제1심 공동피고 M, D, E, F, G, H, I, J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A, B, C, D,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나) 부분 680.17m<sup>2</sup>에 대한 별지3 지분표 '인수지분'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2. 12. 22.자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고, ② 원고, 피고들, 제1심 공동피고 M, D, E, F, G, H, I, J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A, E, F, G, H, I, J, K, L, M, C, B,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7,652.83m<sup>2</sup>에 대한 별지3 지분표 '이행지분'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2. 12. 22.자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③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3 지분표 '인수지분'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1. 2. 22.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나. 피고들, 제1심 공동피고 M, D, E, F, G, H, I, J는 원고에게 위 가.항에 따라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완료된 선내(가) 부분 7,652.83m<sup>2</sup>에 대한 각 소유지분 및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3 지분표 '인수지분'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1. 2. 22.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### 2. 판단

가.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B, C 사이의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

## 이행 및 인수 부분에 대하여

1)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,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(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다46338, 46345 판결 등 참조).

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,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·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,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(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다44313 판결 등 참조).

2) 판단 원고는, 시아버지 망 R이 1940. 9. 10. 망 S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, 망 T가 1962. 5. 14. 사망한 이후 원고의 남편 망 T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여 단독 소유하였음을 전제로, 망 T가 망 Y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였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, 선행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'망 R과 망 S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거나, 망 R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한 망 T와 제1심 공동피고 D, 망 U, V, W, X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'는 망 T와 AE의 주장사실이 모두 배척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달리 선행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이외에 원고 주장의 각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.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, 망 T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로서 망 Y에게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분할 전 P의 면적은 9,719m<sup>2</sup>이고 망 Y은 위 임야 중 793/9719 지분을 취득하였는데, 원고가 주장하는 망 Y의 소유 면적은 680.17m<sup>2</sup>로 등기사항증명서상 지분과도 일치하지 않은 점, ② 이 사건 부동산의

공유자들이 망 Y와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을 점유·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해당 부분을 망 Y와 그 상속인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,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 사이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, 망 Y 또는 제1심 공동피고 B, C이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하기로 하는 상호명의신탁의 합의가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 **나.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**

1) 관련 법리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(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7다카1418, 1419 판결 등 참조).

2) 판단 먼저, 망 T가 이 사건 취득시효 주장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, 갑 제6,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AG의 증언만으로는 망 T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개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취득시효 주장 부분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전부를 20년 이상 점유·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설령 망 T가 이 사건 취득시효 주장 부분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전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 하더라도,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 확정판결에서 망 R과 망 S 사이 및 망 T와 제1심 공동피고 D, 망 U, V, W, X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사실이 모두 배척되었고, 선행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이외에 위 각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사실 혹은 망 T가 이 사건 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, 망 T와 제1심 공동피고 D, 망 U, V, W는 이 사건 등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8926/583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망 T가 이 사건 취득시효 주장 부분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자신이 지분을 넘는 부분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, 망 T가 이 사건 취득시효 주장 부분 전부

및 이 사건 제2부동산 전부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지분비율의 범위에서는 이를 자주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.

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 2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준민

판사이미경

판사이효신

별지